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5.2.27.] [국토교통부령 제186호, 2015.2.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주택수요자가 시장여건 및 개인사정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의 변경기간 제한 등을 완화하고, 국민편의 제고 및 입주자선정 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하여 입주자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입주자선정 시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 요건 완화(안 제2조제9호, 제5조의2제2항 및 제9조제2항 등)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요건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는 세대원의 범위를 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이러한 사람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서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인 사람 등으로 명확히 함.

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안 제2조제14호 및 별표 1 제2호가목 등)

현재 입주자 순위를 정하는 가점제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항목과 소유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는 동시에 감점항목에 따라서도 감점을 받고 있는 과도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감점항목을 폐지하려는 것임.

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안 제5조의5제2항·제3항 및 별표 1의2)

1) 현재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등 입주자저축의 경우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정해져 있고, 입주자저축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변경이 가능하며, 주택의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에 제한이 많음.

2) 주택수요자가 시장여건 및 개인사정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치금액 변경기간 및 변경된 예치금액에 따른 주택 공급신청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라.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5항 등)

1)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의 경우 입주자선정 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회수 등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로 구분하고, 1순위 및 2순위의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무주택기간 및 저축총액 등에 따라 각각의 순차별로 구분하며, 3순위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던 것을, 입주자저축에 따른 순위는 2개 순위로, 1순위 안에서의 순차도 2개 순차로 각각 간소화하려는 것임.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경우 입주자선정 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회수 등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로 구분하고, 1순위 및 2순위의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가

점제 적용과 추첨의 방법으로 구분하며, 3순위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던 것을, 입주자저축에 따른 순위를 2개 순위로 간소화하려는 것임.

마.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

1)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비율을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현재 4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을 적용하고, 그 비율을 정하여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40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

2) 2017년 1월 1일부터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비율을 별도로 공고하지 아니하면 입주자선정 시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고 전체 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함.

바.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안 별표 1 제1호가목2)]

가점제 적용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주택가격 변동률 및 지역별 주택가격 편차를 고려하여 무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기준을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8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제2조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을 "가점항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무주택기간

나. 부양가족수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한다)과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공공주택에 대하여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하 "미성년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 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제5조의2제2항 중 "세대주"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를 "가입(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가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를 "가입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년이 지나면"을 "그 납입한 금액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대주"를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세대주"를 각각 "공급신청자"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2년"을 "1년"으로, "24회"를 "12회"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24개월 및 24회"를 "12개월 및 12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을 "제1항에 따른 제1순위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제11조제2항제2호가목 중 "5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를 "납입횟수"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순위"를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차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제11조의2제1항제1호가목1)가) 중 "2년"을 "1년"으로, "24회"를 "12회"로 하고, 같은 목 1)나) 및 다) 중 "2년"을 각각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2) 외의 부분 단서 중 "24개월 및 24회"를 "12개월 및 12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각 호"를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순위"를 "제2순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1)가) 및 나) 중 "2년"을 각각 "1년"으로 하고, 같은 목 2)라)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2) 외의 부분 단서 중 "24개월"을 "12개월"로 하고, 같은 목 2)라)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각 호"를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3순위"를 "제2순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제3순위"를 "제2순위(제13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순위를 말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배우자인 세대주"를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제10항제4호 중 "세대주"를 "공급신청자"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도"를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 본문 중 "순서를 정하여 별지 제4호의3의 서식"을 "순서를 정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희 망한"을 "희망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선정하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제11조제2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의 순차보다 우선하여야"를 "선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6항제1호나목 중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마목 중 "세대주"를 "공급신청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도"를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21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8항·제9항"을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8항·제9항"으로, "세대주"를 "세대주·세대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세대주"를 각각 "세대주·세대원"으로 한다.

제26조제5항 중 "제1순위 및 제2순위"를 "제1순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세대주"를 "세대주·세대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한다)"를 "(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배우자인 세대주"를 "배우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3 중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체는"을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를 "(제1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하며, 제6호·제6호의2·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보호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주체는"을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통보된 자(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한다)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통보된 자(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공급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대주"를 "공급신청자"로,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배점"을 "배점(제4호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태아를 포함한다)"를 "[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전단 중 "주택가격이 7천만원"을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일반기준: 가점제 점수는 나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9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각 목 외의 부분에 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항·제7항·제10항·제13항, 제20조의2제5항·제6항·제10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4항·제5항·제9항·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감점항목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4호, 별표 1 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주택의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각 목 외의 부분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1항·제2항·제5항, 제12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0조의2제4항, 제26조제5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시장등이 공고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2항(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제5조의3제4항관련)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지 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2. >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 공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주택위치	주거전용면적(㎡)	
	주택유형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확인사항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1순위	
	계좌번호		
	납입액	원	납입회수 회
	가입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은행 지점 (인)			

위와 같이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무주택서약서 1통 2.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초)본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자출용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6. 2.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 공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주택위치			주거전용면적(㎡)	
	주택유형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확인사항	종류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 1순위			
	계좌번호				
	예입액 또는 납입액	원	납입 회수	회	
	가입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은행			지점 (인)

위와 같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무주택서약서 1통 2.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초)본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자활용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2. >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주택위치	주거전용면적(m ²)		
	주택유형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원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확인사항	종류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 1순위		
	계좌번호			
	예입액 또는 납입액	원	가입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 청약저축,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은행 지점 (인)			

위와 같이 민영주택의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3.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은 해당하는 경우에 만 작성하십시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16. 2. >

공공주택 분양주택 입주예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시고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구분	주택위치			주택종류	주거전용면적
	1지망	시	구	동		㎡
	2지망	시	구	동		㎡
	3지망	시	구	동		㎡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확인사항	종류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 1순위				
	계좌번호					
	납입액	원	납입회수		회	
	가입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은행					지점	(인)

위와 같이 보증자리주택의 입주예약을 신청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무주택서약서 1통 2. 특별(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초)본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저함용품)]